

— 農水產物 및 食品을 中心으로 —

# 輸入自由化와 그 對應姿勢

金 榮 鎮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 1. 輸入自由化와 그 背景

수입을 자유화한다 함은 수입품의 物量規制 (quantity control)와 關稅障壁을 제거한다는 두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느 품목에나 이 두가지 뜻을 완전하게 포함한 수입자유화란 어느 나라든 있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수입자유화는 輸入禁止, 輸入限度制, 輸入link制, 輸入推薦制 등의 行政的規制를 없앤다는 것일 뿐 관세에 의한 規制마저 제거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開放體制가 진전됨에 따라 행정적 규제와 동시에 각국의 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는게 국제적 경향이다.

이 수입자유화의 이론적 기초는 比較優位論에 있다. 이를 간략히 풀이하면 한 나라의 경제가 완전고용상태가 되면 自國의 생산품중에서 比較優位品目을 많이 생산하는 대신 比較劣位品目的 국내수요를 輸入으로 충족시키자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비교열위품목을 생산하던 人的 및 自然資源은 보다 높은 생산체제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한 自由貿易原則이 세계 무역의 신장이나 경제발전에 기여해온 것만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理論을 現實에 적용시키기에는 몇가지 問題點과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첫째로 自然資源이나 기술의 부족으로 國內生産이 불가능한 原油, 食糧, 機械, 部品, 素材 등의 수입만으로도 外換不足으로 많은 外債를 지고 있는게 개발도상국들의 실정인데 국내생산이 가능한 품목마저 比較열위품목이라 하여 계속 수입에 의존한다면 차관이나 外債의 累積은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로 우리나라와 같은 不完全雇傭 상태하에서 比較劣位品目的 생산을 포기한다면 失業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국가는 失業群을 위해

더 큰 부담을 저야 할 것이다. 1985년의 경우 통계상 실업율은 4%로 되어 있는 바 이를 實數로 표시하면 우리나라에는 약 62만명의 실업자가 있는 셈이다.

셋째로 비록 比較劣位品目이라도 기술과 품질개선으로 단위당 생산비 인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에도 어느 時點의 가격비교나 불확실한 예측을 통해 생산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 대량 수출되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처음부터 국제경쟁력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넷째로 政治, 社會, 歷史적으로 국가의 위신이나 安全保障, 그리고 소득보장 등의 관점에서 비교열위산업이라도 育成保護하여야 할 品目이 있다. 主穀食糧이나 防衛産業 등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수입자유화는 국제수지, 실업방지, 유치산업보호, 국가안보 등의 차원에서 여러가지 問題點들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점진적이거나 輸入自由化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세가지 現實的 문제점에 부딪쳐 있기 때문이며, 여기에 편견을 가진 비교우위 주창자들이 적극적으로 가세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여 수출을 주도로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보다 많이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상호 협조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한걸음 나아가 우리의 門戶를 닫아 놓고 일방적인 수출증대만을 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84년도 우리가 수출한 저밀도 폴리에틸렌테진의 求價貿易형식으로 7,000%의 필리핀산 바나나를 수입한 것이라든가, 금년도 사과수출의 댓가로 3,000%의 바나나를 수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또 금년도 9월부터 연간 약 16억원 상당의 농가 소득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담배수입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 담배가 품

질이나 가격면에서 불리하거나 생산이 부족해서 수입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美國은 保險産業, 知的所有權, 쇠고기, 포도주, 오렌지, 알팔파페렛 등의 수입개방을 요청하면서 섬유제품의 수입을 규제한다든지 北洋의 漁獲쿼터를 줄이는 것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간에 만부득이 이에 타협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우리 商品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品質개선도 중요하지만 生産原價를 낮추거나 인상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3低時代를 맞이하여 물가오름세가 연간 2~3%에 머물자 좀 잠잠해지기는 하였지만 종래 농산물 수입의 큰 명분은 국내물가의 억제였다. 과거 우리 상품의 수출신장이 계획대로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낮은 勞賃에 있었다. 勞賃의 인상억제는 낮은 生計費에 있으며 生計費지출의 억제는 物價安定이 첩경이다.

대부분의 우리 農産物은 국제가격보다 高價임으로 物價安定과 需要充當을 내세워 과거 여러 종류의 농산물을 정책적으로 수입해 왔다. 과거 말뚝담던 쇠고기 수입이나 값싼 소주를 생산코저 국산 고구마 대신 외국의 당밀이나 타피오카를 수입한 것들이 그 예이다.

셋째로 국내생산이 흉작이 들어 만부득이 수입하는 수가 있다. 이 경우 수입은 나라살림상 여러가지 도움이 된다. 예컨대 78년의 고추파동 때의 고추수입이나 80년 冷害로 인한 쌀수입 등은 국내경제의 혼란을 막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준게 사실이다. 그러나 수입은 때때로 適正量判斷을 그르쳐 과잉수입으로 인한 물가폭락을 가져왔거나 익년도의 생산을 그릇치는 경우가 있어 輸入을 무조건 罪惡視하는 경향마저 생기게 되었다.

## 2. 輸入自由化 現況

우리나라의 輸入自由化率은 80년 하반기까지 68.6%였으나 외국의 개방압력과 더불어

〈表 1〉 輸入自由化率 現況(全體)

區 分	現 行	改 正	備 考
總 品 目 數	7,915	7,915	○ '86年 自由化豫示品目 302中 自由化措置分 281 自由化延期分21 <sup>1)</sup>
自動承認品目 制 限 品 目	6,945 970	7,246 699	○ '87年 以後 自由化對象品目中 早期開放分 21 <sup>2)</sup> 新規制限分 1 <sup>3)</sup>
自 由 化 率	87.7%	91.5%	○ 輸入自動承認 品目增加 301

註: 1) 자유화연기분 중 농수산물은 냉동복어(보류), 바다가재(보류) 등  
 2) 조기개방분 중 농수산물은 소라, 전조대구, 열장정어리 등  
 3) 신규제한분은 아스파탐(原糖의 代潛糖元)으로 2년간 수입규제

〈表 2〉 産業別 輸入制限 現況

區 分	總品目	制 限 品 目		增 減	新 規 自 動 承 認 主 要 品 目
		85/86	改 正 (86/87)		
1. 1次產品 및 飲·食料品	1,386	302 (78.2%)	280 (79.7%)	22 (1.5%)	칠면조 고기, 기타 가금류의 고기, 가금류의 식용설 육, 무물린, 소라, 전조대구 등 토마토 소오스, 인 스탄트카레 등
2. 화학·요염 제품	2,182	94 (95.6%)	46 (97.9%)	48 (2.3%)	소다회, 포티스티렌 등
3. 철강·금속 제품	797	35 (95.6%)	11 (98.6%)	24 (3.0%)	
4. 기계류	1,414	240 (83.0%)	148 (89.5%)	92 (64%)	냉동기계, 디젤엔진 등
5. 전자·전기 제품	494	129 (73.9%)	64 (87.0%)	65 (13.1%)	스피커 및 컬러 TV, TV브라운관 등
6. 섬유류	1,089	75 (93.1%)	42 (96.9%)	33 (3.9%)	모직물, 나이론 카피트 등
7. 기 타	553	95 (82.8%)	79 (85.7%)	16 (2.9%)	
計	7,915	970 (87.7%)	669 (91.5%)	301 (3.8%)	

( )內는 輸入自由化率

資料: 韓國關稅研究所, 關稅. 1986. 7, p. 32.

〈表 3〉 農水産物 輸入自由化率

區 分	總 品 目 數	自 動 承 認 品 目 數		自 由 化 率 (%)	制 限 品 目
		'86/'87	果 計		
전체산업합계	7,915	301	7,246	91.5	669
農 産 物 部 門	합 계	717	472	65.8	245
	農畜産物	492	349	70.9	143
	水産物	225	123	54.7	102

지난 5년간에 그 비율은 급격히 증가되었다.

〈表 1〉에서 보는 것처럼 86년 하반기 현재  
 모두 7,915품목 중 自動承認品目과 制限品目

을 포함하여 모두 7,245품목이 개방되어 그  
 비율은 91.5%에 이르고 있다. 이는 약 20년  
 전의 일본수준이나 10년전의 대만수준과 같은

〈表 4〉 主要 加工食品의 輸入制限 內譯(1985下半年~1986上半年)

品 目 別	CCCN 番 號	總品目數	期別公告	特 別	法 用	輸 入	輸 入	先 進
			品目數	品 目	品 目	品 目	品 目	品 目
肉 과 食 用 설 육	0206	5	5		4			
밀 크 와 크 림	0401~0402	7	7		1			
버터, 치즈, 커어드	0403~0404	4	4					
조란 과 난 황	0405	3			3	3		
곡 아, 전 분 등	1101~1105	10			6			1
맥 아, 전 분 등	1107~1109	4	1		2			
動植物性油脂類	1501~1517	80	8		10			1
肉 加 工 食 品	1601~1603	11	10		9			
漁貝類加工食品	1604~1605	35	17					
당류 및 설탕 과 자	1701~1705	20	1		4	5		
코코아 및 그의 製品	1801~1806	11						
곡 물 조 제 품	1902, 1904, 1905	10	3					
국 수 류	1903	6						
빵 및 비 스 켓 류	1907~1908	14						
채소 및 과일 調製品	2001~2007	50	34			4		
커 피, 차	2102	4				1		
소오스, 수우프, 부로드	2104~2105	15			4	2		
酒 류	2203~2209	36	30					
飲 料 製 品	2107의 一部 및 2201~2202	11	2		2			
식 초 및 그 대 용 품	2210	2						
計		338	122		45	15		2

資料：韓國貿易協會，「品目別 輸出入要領」

〈表 5〉 農產物 輸入實積

(單位：百萬달라)

區 分	1970	1975	1980	1982	1983	1984	1985
農 產 物	341.2	1,020.7	2,235.7	1,921.7	2,141.1	2,103.3	1,813.8
穀 物	244.8	689.1	1,073.1	886.8	1,013.1	1,004.2	912.4
肉 類	1.0	11.8	22.6	158.8	155.5	72.2	21.3
油 脂 作 物	5.4	17.4	207.6	189.5	212.5	246.6	249.1
動 物 性 油 脂	15.2	52.8	125.5	142.5	146.4	179.0	153.2
植 物 性 粕 類	23.2	1.5	2.7	31.3	74.1	47.4	19.5
채 소 류	0.5	12.0	5.9	23.1	26.4	42.1	35.5
산 動 物 류	2.3	1.2	9.9	46.4	66.7	40.9	9.2
茶 및 香 辛 류	4.3	7.6	37.3	36.7	29.8	42.0	59.9
糖 류	28.9	206.8	534.2	251.1	223.9	217.5	163.4
煙 草	0.8	8.9	78.1	8.4	17.2	13.1	10.0
其 他	14.7	11.8	138.8	147.2	252.1	180.3	180.3

註：水產物은 未包含

資料：關稅廳，「貿易統計年報」

自由化율이다.

이를 산업별로 보면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次產品이나 飲食料品은 79.7%로서 그

중 칠면조 고기, 기타 가금류의 고기, 가금류

〈表 6〉 年度別 輸入自由化豫示品目(農水産物)

年度	品目數	品 目	
'87	5	패지고기 통조림, 가금고기 통조림, 감(단감제외), 방광, 소시지 유사조제품	예시
'88	5	마르멜로, 황도통조림, 파실 각태일 통조림(가당), 조제과실통조림(무가당), 대두유	예시
計	14		

資料 : 農水産部, 國際協力課

의 식용설육, 루폴린, 소라, 진조대구 등, 토마토 소오스, 인스탄트 카레 등은 '86하반기에 새로히 추가된 주요 품목들이다.

우리 생활의 기초식품인 간장, 식초 등을 개방한 이래 계속 자유화율은 높아가고 있으나 그래도 化學, 철강, 섬유, 기계, 전자제품 등의 工業品에 비하면 식품의 수입개방은 낮은 수준이다.

이를 다시 〈表 3〉에서 보는 것처럼 農水産物에 국한시켜 보면 水産物이 54.7%, 農畜産物이 70.9%로 農水畜産物 모두의 平均은 65.8%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규제품목인 쌀, 사료용 곡물, 대두박용 콩, 밀, 보리 등은 자유화품목은 아니라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수입할 수 있음으로 사실상 규제의 의미가 없다. 이들의 품목을 自由化品目에 가산한다면 농축수산물의 자유화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다음으로 '86하반기 주요 가공식품의 자유화율은 아직 그 내역이 입수되지 않아 '86上半期 것을 그대로 〈表 4〉에서 보면 모두 338개 품목 중 184개 품목이 개방되어 가공식품의 자유화율은 54.4%에 이르고 있다.

部門別로 보면 가공식품의 자유화율이 가장 낮은 편이나 그 까닭은 되도록이면 낙후된 식품산업을 보호하고자 완제품의 수입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라 풀이된다.

이와 같은 자유화율의 증가는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수산물의 수입액을 계속 증

가시키고 있다. '85년도에는 '84년보다 약 3억 불 상당의 수입이 줄어 들었으나 이는 수입농산물의 국제가격이 하락한데 원인한 것이며, 결코 수입물량이 줄어든데서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예컨대 밀, 콩, 옥수수, 糖類 등의 국제가격이 폭락하였다거나 국내 사정으로 쇠고기, 가축 등의 수입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의 잠재수요는 茶 및 香辛料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 늘고 있고 비록 수입수요가 늘지 않더라도 앞날 농수산물이나 가공식품의 開放化壓力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예컨대 美國의 연간 무역적자는 1,500억불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적자는 농산물수출에서 얻어진 黑字로 공산품수출입에서 발생된 적자를 일부 상쇄하고도 남은 적자액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농산물(주로 곡물) 수출에서조차 심각한 불황을 타고 있다. 호주, 캐나다, 타이, 중공, 알제틴 등 경쟁국의 穀物이 増産되고 경쟁적인 가격인하가 겹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곤경에 처한 미국이 '86년 약 60억불로 추산되는 對美輸出黑字國인 우리나라에 대해서 開放壓力을 가할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특히 그들의 강점인 농산물이나 이의 가공품인 식품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앞날 수출의 증대는 곧 비례적인 수입의 증대를 가져 올 것이고 우리의 수출품이 공산품이라면 수입품은 비교열위에 있는 농수산물이나 식품이 될 것이다. 이는 곧 직접 간접으로 국내생산을 위축시킬 것이며 경쟁력이 약한 품목에서 더욱 그럴 것이다. 참고로 연도별 수입자유화 예시품목을 보면 〈表 6〉과 같다.

### 3. 우리의 對應姿勢

수출증대를 전제로한 수입자유화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되도록 수입을 늦추는 것은 국제수지나 국내의 유치산업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뜻에서 앞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점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앞으로의 수입개방 순서는 國產不能品目, 嗜好不適品目を 먼저 개방하고 완제품보다는 반제품, 반제품보다는 原料수입을 먼저 自由化하여 國內에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서 國內의 식품산업을 보호하여야 한다.

自由化 品目數를 늘리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인정되지만 「토마토 페이스트 통조림」을 자유화하면서 이의 완제품인 「토마토 케찹」이나 「토마토 소스」를 잇달아 개방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 '85년에 「토마토 페이스트」는 약 3.5百萬\$ 상당량이 수입되어 아직 기업으로서는 유리한 단계에 있으나 어린世代들의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되어 이의 완제품 산업은 앞으로 육성할 만한 유망한 업종이다.

둘째로 이미 開放된 品目이라도 국제협약에 어긋라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輸入先을 우리 상품의 수출선과 link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최근 사료곡물수입에 있어서 우리 商品의 수출과 하등 관련이 없는 中共產 옥수수를 전체 수입량의 31%나 수입하여 못팔아 허덕이는 美國의 분노를 사느니 보다 우리 상품을 수출하여 우리가 연간 60억불의 交易上 黑字를 보는 美國產 옥수수를 보다 많이 수입함이 國益에 보탬이 될 것이다.

'83년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는 美國產 옥수수를 90% 이상 수입하여 왔으나 수입상의 利害 때문에 '86년 상반기(1~5月)에는 겨우 16%밖에 수입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美國의 불만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며 우리 상품의 수출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셋째로 輸入自由化品目이라도 수입부과금이나 관세장벽을 높여 수입량이나 국내소비를 억제하고 國內의 相關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예컨대 수입콩을 原料로 하는 豆乳産業은 값싼 수입콩 값을 기저로 빠른 成長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경합되는 國產 우유의 소비성장은 계속 둔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粉

芻의 在庫積滯를 해소하기 위하여 國內 판매가격의 20% 수준인 파격적인 가격으로 國產 분유를 외국에 수출하는 奇現象마저 빚고 있다.

이를 나라살림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며 이 경우 수입콩에 상당액의 부과금을 붙이더라도 國산우유가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째로 이미 수입자유화된 품목이라도 日本에서 보는 것처럼 非關稅障壁을 높여야 한다. 제품의 제조일자, 유통기간, 운송 및 보관조건, 품질, 위생조건, 용도, 외상수입기간의 단축 등에 대한 규정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들의 조건은 수입하는데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수입 후의 國內유통에도 감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수년전 유허과자라는게 판명되어 일본에서 폐기된 상품이 國內에 수입되어 말썽을 빚은 예가 있고 최근에는 일본의 생선 폐기물(대가리)이 수입되어 식품화하는가 하면 74~75년에는 美國의 工業用 소뼈가 수입되어 食品化 함으로서 牛價下落의 보조요인으로 발전되어 많은 농민의 원성을 산 것들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외국의 폐기물이나 공업용 쇠뼈를 수입해다 식품화한다는 것은 무역수지 이전에 국가의 체통이나 민족적 자존심마저 말살시키는 행위이다. 수입된 공업용 쇠뼈에는 애당초 수출국에서 不可食(inedible)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

또 70년대의 이야기지만 飼料用으로 수입되었던 免稅 Tapioka가 酒精用으로 轉用된 것은 같은 경우이다.

다섯째로 수입자유화된 品目이라도 國內 생산을 포기하지 말고 일정비율의 國산원료를 혼용토록 하여야 한다. 그것은 農家所得이나 外債節減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小麥自給率은 소수점 이하에 머물고 있다. 만일 3百萬%씩 수입되는 小麥의 10%만 國內에서 생산하여 충당한다면 農民에게 돌아가는 收買資金은 줄잡아 연간 1千億원이 넘을

것이며, 外債節減額은 4千萬弗이 넘을 것이다. 이 경우 밀가루 가격은 약간 오르더라도 物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며 밀가루가 덜 소비되는 대신 남아도는 쌀소비는 다소 촉진될 것이다.

여섯째로 새로이 自由化品目으로 추가하는 品目은 되도록 국제경쟁력이 있거나 국내생산이 비효율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다. 또 이미 개방된 品目이라도 계속 국산품의 품질개선과 원가절감을 통하여 消費者의 外製選好傾向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日本の 首相이 앞장서 국민 1人當 100\$ 상당의 外來品을 사달라고 호소해도 국민이 外來品을 소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愛國心이 우리보다 강해서라기보다 아마도 自國產의 가격과 품질이 外來品에 못지 않게 싸고 좋기 때문일 것이다.

일곱째로 우리나라의 食品行政은 品質改善이나 새로운 食品의 개발에 앞서 有害食品이나 不良食品 그리고 非衛生的의 生産過程을 일소하는데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有害 및 不良食品은 국민의 國產食品에 대한 不信을 조장시키고 他食品마저도 계속의 戒心호사상을 조장시키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衛生職 公務員에게 司法權을 주는 등 보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여덟째로 食品關聯 研究機關을 통해 각 식품산업체에 식품개발의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고 그들의 자문에 응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經濟가 발전될 수록 국민 모두가 규격식품을 먹게 마련인 바 그것이 곧 加工食品이다. 이에 필요한 연구는 너무나 뒤져 있다.

아홉째로 食品產業體는 輸入食品과 國產食品의 比較品評會를 갖거나 소비자에게 국산식

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국내 유통과정에서 輸入食品의 外國商표사용이나 광고 활동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열번째로 輸入 뿐 아니라 食品輸出의 경우에도 國益에 보탬이 되는 길을 강구하여야 한다. 예컨대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피조개는 日本市場의 80%를 점하고 있음에도 수출가격 조정을 우리 뜻대로 못하고 있다. 비단 피조개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국내업자거리의 국의 같은 市場에서 경쟁적으로 덤핑판매를 하기 때문이다.

상호협조하거나 수출창구를 단일화하여 이러한 事例를 막음으로서 국내업체의 힘을 길러야 한다.

#### 4. 國民의 外製選好 버려야

앞서 열가지에 걸친 우리의 對應방안을 열거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外製選好傾向을 버리는 것이다.

오늘날 크게 보아 우리의 輸出品은 工產品이 大宗이다. 우리것만 사달라고 할 수 없으니 相對國의 商品도 수입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一次產品인 農水產物이나 이의 加工品들이다.

수출주도의 經濟成長은 비록 計劃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必然的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한 農水產物이나 이의 加工品 수입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것은 大勢인 동시에 農水產業의 運命이기도 하다.

수입을 보다 적게 그리고 되도록 뒤로 미룰 수 있는 길은 얼마만큼 국민이 外製選好를 버리고 나라살림에 협조하느냐에 달려 있다. ■

보다 빠른기상 보다 높은이상 보다 힘찬전진